

국내외 보수 환수(Clawback) 제도 동향

엄 수 진 연구원 (sujin.eom@cgs.or.kr)

- ▶ 보수 환수(Clawback)란, 계약에서 정한 특정 상황 혹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에게 기지급된 보수를 회사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는 계약조항을 말함
- ▶ 2002년 제정된 사베인즈-옥슬리 법에서 보수 환수의 효시가 되는 법률 조항을 찾아볼 수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영국 중앙은행 산하 건전성규제국이 보수 기준 개정 권고안에서 규제대상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보수 환수 시행방안을 제시함
- ▶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업종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서 보수 환수에 관한 내용이 발견됨
- ▶ 보수 환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맥케슨,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HSBC 등 다수의 해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KB금융지주가 보상위원회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함

국가별 보수 환수 근거 법률 및 관련 기준

- 보수 환수(Clawback)란, 계약에서 정한 특정한 상황(예: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등) 발생시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을시 기지급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항 또는 제도로써 대개 금융회사 고용계약에 관련 사례가 많음
- 미국의 사베인즈-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 이하 SOX)에서 보수 환수 제도의 시초가 되는 근거 법률을 찾을 수 있으며, SOX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서는 보수 환수의 요건을 더 완화함으로써 보수 환수 제도의 보편화에 일조함
 - SOX 304조에서는 임원의 위법행위(misconduct)로 인해 회계정보의 수정(restatement)이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임원이 지급받은, 최초 공시일 이후 12개월 동안의 성과급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s, 이하 SEC)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드-프랭크 법 954조에서는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로 인해 초과로 지급된 3년 이내의 성과급을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SEC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⁷⁾

7)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0D 조항으로도 신설 추가됨

-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산하 건전성규제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이하 PRA)은 2014년 3월 13일에 발간한, PRA Handbook의 SYSC⁸⁾ 19A 보수 기준(Remuneration Code) 개정을 위한 권고안(consultation paper)에서 PRA 규제대상기업을 위한 보수 환수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PRA 규제대상기업⁹⁾이 기지급된 변동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세 가지 경우임
 - 임직원이 위법행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 회사 또는 사업부문의 재무적 성과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회사 또는 사업부문이 리스크 관리에 중대하게 실패할 경우
 - 동 권고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동 권고안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변동보수 중 지급 후 최대 6년 동안의 보수를 환수할 수 있음
 - 개정될 보수 기준에서, 보수 환수는 부정행위나 성과 악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법행위나 사업실패에 대해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 되어지지만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 담당하는 역할 또는 상급자라는 직위로 인해 간접적으로 해당 위법행위나 사업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까지도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표 4〉 SOX와 도드-프랭크 법의 보수 환수 근거 조항

SOX(2002) SEC. 304. FORFEITURE OF CERTAIN BONUSES AND PROFITS.
(a) ADDITIONAL COMPENSATION PRIOR TO NONCOMPLIANCE WITH COMMISSION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If an issuer is required to prepare an accounting restatement due to the material noncompliance of the issuer, as a result of misconduct, with any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 under the securities law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chief financial officer of the issuer shall reimburse the issuer for—(1) any bonus or other incentive-based or equity-based compensation received by that person from the issuer during the 12-month period following the first public issuance or filing with the Commission (whichever first occurs) of the financial document embodying such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 and (2) any profits realized from the sale of securities of the issuer during that 12-month period. (후략)
Dodd-Frank Act(2010) SEC. 954. RECOVERY OF ERRONEOUSLY AWARDED COMPENSATION.
(a) LISTING STANDARDS.—The Commission shall, by rule, direct the national securities exchanges and national securities associations to prohibit the listing of any security of an issuer that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b) RECOVERY OF FUNDS.—The rules of the Commission under subsection (a) shall require each issuer to develop and implement a policy providing— (중략) (2) that, in the event that the issuer is required to prepare an accounting restatement due to the material noncompliance of the issuer with any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 under the securities laws, the issuer will recover from any current or former executive officer of the issuer who received incentivebased compensation (including stock options awarded as compensation) during the 3-year period preceding the date on which the issuer is required to prepare an accounting restatement, based on the erroneous data, in excess of what would have been paid to the executive officer under the accounting restatement.

8) SYSC는 '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를 의미함

9) PRA 규제대상 기업은 약 1,700개의 금융회사임

- 우리나라에서 보수 환수에 관한 내용을 다룬 법규로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하여 공시하고 있는 금융업종별 성과보상 체계 모범규준이 있음
 - 동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금융지주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기업임
 - ‘은행’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규칙적·조직적인 업(業)으로 수행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함
 -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를 말하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됨
 -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종목 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앞서 언급한 미국 및 영국의 법규는 보수 환수의 근거가 되는 귀책사유가 임직원의 위법행위 및 과실로서 제재의 구속력이 강하지만, 국내 법규는 재무성과 달성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상적인 관행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에 불과해 강제성이 거의 없음

〈표 5〉 금융업종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의 보수 환수 관련 조항

금융지주회사의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제11조 (변동보상의 조정) 주요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전체, 주요 자회사등, 담당부서 또는 해당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성과별 책임범위에 상응하여 경영진과 특정직원의 성과급 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malus or clawback arrangements)을 통하여 변동보상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제11조 (변동보상의 조정) 금융기관은 회사전체, 소속부서, 개인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과별 책임범위에 상응하여 경영진과 특정직원의 성과급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malus or clawback arrangements)을 통하여 변동보상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제14조 (총변동보상액의 축소) 금융투자회사는 과거 변동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연계하여 부정적인 성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성과별 책임범위에 상응하여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 이연지급액의 축소(malus or clawback arrangement) 등을 통하여 총변동보상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제14조 (총변동보상액의 축소) 보험회사는 해당 회사 전체, 담당부서 또는 해당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성과별 책임범위에 상응하여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 이연지급액의 축소(malus or clawback arrangement) 등을 통하여 총변동보상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보수 환수 제도 도입 및 시행 사례

- 보수 환수 제도나 계약 관행을 체계화하여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는 맥케슨(McKesson),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oyal Bank of Scotland), HSBC, 로이즈(Lloyds Banking Group), JP모건(JP Morgan),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등이 있음
 - 미국 의약품 도매업체 맥케슨의 보상위원회와 경영진은 2013년에 있었던 보수 환수에 관한 주주제안을 토대로, 동사의 보상 회수 정책(Compensation Recoupment Policy)을 개정함. 2013년의 주주제

안은 구속력이 없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상 회수 정책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보수 환수 실행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였음

- 부정행위에 의도성이 없거나, 회사의 재무 및 영업성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위원회는 기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음
- 동사의 이사회나 보상위원회는 프라이버시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공시 의무에 따른 보상 환수 개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시해야 함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은 LIBOR¹⁰⁾ 조작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하여 3년에 걸쳐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함
- HSBC는 2012년, 투자채권 불완전판매로 수천명의 노년층 고객과 당사에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는 임원들에 대해 주식과 현금을 환수함
- 로이즈도 2012년 초에 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라는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前 CEO인 에릭 대니얼스(Eric Daniels)를 포함한 임원들로부터 2010년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함
- JP모건은 2012년에 58억 달러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의 2년치 보수를 회수하였음
- 도이체방크는 새로 채용한 임원의 실적이 당초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前 직장에서 받은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12년 1월 도입함
 - 성과급 환수 정책을 시행하는 은행들이 다수 있지만 前 직장의 성과급까지 되돌려 받는 것은 도이체방크가 최초임

- 반면, 국내에서는 임직원으로부터 보수를 환수한 사례가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바가 없음. 다만, 보상위원회 규정에서 보수 환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업으로는 KB금융지주가 있음¹¹⁾
 - 보수 환수는 개별 고용계약에서 계약조항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공개되지 않은 고용계약에서 보수 환수 조항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각사의 미공개 보상위원회 규정에도 보수 환수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표 6〉 KB금융지주 평가보상위원회 규정의 보수 환수 관련 조항¹²⁾

제4조(결의사항 등) 제1항 제7목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위, 손실발생,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성과급 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환수(clawback)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범위 결정
--------------------------------	--

10)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의 주요 은행 간 대출시 적용되는 평균 이자율
 11) 국내 상장사 중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2013년 기준으로 56사이고, 이 중 보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기업은 10사(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BS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삼성전자, SK텔레콤, 케이티, 롯데하이마트, 대림산업)임
 12) KB금융지주와 같이 보상위원회의 결의사항 중 하나로 보수 환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금융지주와 우리투자증권은 각사의 보상위원회 규정에서, 회사 성과보상체계의 금융업종별 성과보상 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상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미약하게나마 보수 환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